

신보험수가 행위소개와 임상 적용: 양압기



윤 창 호

분당서울대병원

Chang-Ho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2018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에 의거 양압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이 공표되었다. 양압기 처방 방법과 기준,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양압기 적응 기준

- 1) 제 I 형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 받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이다.
- 2) 중등도 이상(AHI ≥ 15) 무호흡과 증상이나 동반질환이 있는 경증 환자가 그 대상이다.
- 3)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 등록 신청서 또는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을 발급한다(주.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등록 신청서와 양압기 처방전 내용을 한 서식에 모두 포함)

2. 양압기 처방

- 1) 양압기 처방전 발급: 압력, 처방구분, 양압기 종류, 처방 기간을 지정한다.
- 2) 단, 양압기 처방은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제 1형 수면다원검사 시행 1년 이내에 발급한 경우만 급여 적용

가능하다.

- 3) 첫 3개월 간 양압기 순응기간 처방 후 '연속된 21일 이상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사용 기록'이 있으면 급여 연장 처방이 가능하다.
- 4) 양압기 순응기간에 순응도가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후 다시 한번 양압기 순응 기간 처방이 가능하다.
- 5) 순응도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연장 적용 받는 경우 6개월 마다 병원에 내원하여야 한다.

3. 개선이 필요한 부분

- 1) 적절한 양압기 순응도 확보를 위한 환자 교육(양압기 작동 원리, 사용 목적, 타치료 대비 장점, 장기적 효과, 양압기 작동법, 부작용, 사용 문제의 해결)에 투자하는 막대한 시간적 인적 자원에 대한 건강급여 보상이 전혀 없음.
- 2) 초기 순응기간 3개월 간 기준을 통과하면 이후 연장 처방은 순응도와 무관하게 지속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무의미한 의료재정의 지출만 예상됨.